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7. 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6호, 2024. 6.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산물의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 및 기준·규격이 일치하면 동일품명으로 인정하는 등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완화하고, 농·임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다성분시험법 전체 항목으로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하고,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물질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기준 완화(안 제7조)

수산물 동일 어종임에도 제품형태(냉장, 냉동 등)나 처리형태(원형, 자숙여부 등)가 다르면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과 기준·규격이 동일한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타 고시 등에서 중복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

나. 축·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9조)

축·수산물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 원본의 범위를 원본과 함께 발행된 부분 및 축·수산물 검역기관이 원본을 확인한 사본으로 확대

다.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 1)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수산부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 2) 축산물 관리수의사의 현물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방법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

라.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과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일원화(안 제13조 및 [별표 5])

- 1) 농·임산물 등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2.2. 다성분시험법에서 정한 항목 전체를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밀검사 잔류농약 검사항목([별표 5])을 삭제함.

- 2)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정밀검사는 해당 물질의 사용 원인이 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해당 물질을 검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조건부 수입검사 사후관리 대상과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 명확화(안 제14조 및 제19조)

조건부 수입검사 제품의 사후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제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을 신설하는 등 규정 명확화

바. 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조문 이동 등 (안 제15조, 제19조 및 [별표 8])

수입신고서는 관세청 통관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신고하고 있고, 신규품종의 등록은 수입식품검사관의 현장검사를 통해 품명확인을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사. 부적합 축산물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정비 (안 제17조)

부적합 발생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의 조치 내용이 조항 내에서 중복되어 정비

아.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사후 조치 방법 개선(안 제18조)

영업자가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제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자. 축산물인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안 제21조)

축산물인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시험항목을 최초정밀검사 등 정밀검사 중점검사
항목으로 개정하여 다른 품목과 일치시킴

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 등(안 제24조)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 중
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용 조항을 수정함

카.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1])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태국산 망고 및 호주산
과실주를 인정 범위에서 제외함

타. 추가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검
체량 등을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정비(안 [별표 2] 및 표6)

- 1) 검사관이 현장 관능검사 후 추가 관능검사가 필요하여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2) 수산물 관능검사 결과표에 관능검사 검체채취량을 작성하여 관리하
도록 함

파.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정비(안 [별표 7] 및 표8)

- 1)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검출된 물질의 위해도에 따라 부적합 축
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개정
- 2)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하여 그룹별 검출
물질 정비

하.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조항 수정 (안 제17조, 제25조)

- 1)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마목에서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 삭제
- 2) 수입최소량 관련 인용 규정(총리령 제1885호(2023. 6. 9)) 개정으
로 인용조항 수정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2
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kjm79@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6호, 2024. 6.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제2호 중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상의 품목번호가 같고 정밀검사에”를 “정밀검사에”로 하고, 제3호 중 “말하며, 식육의 제품명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축산물의 경우 부분을 포함하며, 수산물의 경우 국내 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를 “(부분 또는 국내 축·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수산물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등 부산물(단,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④ 제2항의 현물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은 현장에 출장하여 현물을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2.2. 다성분 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3 단성분 시험법에 따른 단성분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쌀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수입되는 쌀의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3항제3호 중

“별표 3”을 “이 고시 별표 3”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청장은 신규품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한국명, 영명, HSK코드, 서식지(해수, 담수)와 학명, 일명, 기타 참고사항 등이 명시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는”을 “제1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수출국 정부는”으로 하고,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청장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를 “지방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부적합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 중 제1항의 “①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지방청장이 수입신고확인증에 발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2호 중 “조건부”를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건부”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 : 위반사항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음
-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중점검사항목(축산물의 경우 무작위검사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10) (1)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를 “9) (1)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당뇨병치료제”로 하고, 제2호 중 “화학적 합성품”을 “화학적 합성품(다만, 제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물질은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 중 “4)”를 “5)”로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 농·임산물

연번	대상식품	생산국
1	강낭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 호주
4	팥	중국
5	감	중국
6	레몬	미국
7	오렌지	미국, 칠레
8	포도	미국, 칠레
9	커피원두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10	호박	뉴질랜드, 중국
11	체리	미국
12	우영	중국

III.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제조국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3	연육	중국,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4	볶은커피	영국, 일본, 독일, 베트남, 스위스, 호주, 말레이시아, 스페인
5	인스턴트커피	미국, 일본
6	위스키	영국, 프랑스, 미국
7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8	텍스트린	일본, 중국
9	엑상커피	미국
10	조제커피	캐나다
11	준초콜릿	미국, 일본, 프랑스

연번	대상식품	제조국
12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벨기에
13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4	과실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15	맥주	독일, 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16	당절임	미국
17	개량메주	중국
18	물엿	중국

※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별표 2 중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식품위생검사관은 반입 장소에 출입하여 입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단 검사, 해동 검사, 인위적 물주입 등이 필요한 경우 검체를 채취하여 관능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용기 등이 갖추어진 시설로 운반하여 검사할 수 있다.

표6 중 수산물 관능검사 결과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물 관능검사 결과표							
접수번호	품종명(HSK)	원산지 (수출국)	용 도 (검사방법)	수량 중량 금액	중 합 판 정		검사관
					적 합	부적합	
업체명(대표자)		포장종류	검체량 (kg)	화물관리번호	검사기간		
소비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조회사							
수출업자							

수입식품위생검사관 발급조건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20			
외관(형태)																			
색깔(색택)																			
선 별																			
· · ·																			
· · ·																			
판 정																			
특기사항																			
유의사항	○ 품종란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한국명을 기재하고 ()하여 영명 또는 학명을 기재하며, 한국명이 없는 경우는 수출국의 품명 등을 기재한다. ○ 채점은 제품별, 검사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또는 점수로 기재한다.																		
관능검사 판정팀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확인자 (팀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1. 적용 대상

시행규칙 제32조, 제43조 및 별표 9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축산물

2. 검출물질 분류

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출물질 분류는 [표8]과 같다.

나. [표8]에 따른 검출물질 중 그 위해성 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검출물질 분류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다. 수입 축산물 검사 결과 새로운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판정하여 부적합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8]의 제1그룹 물질 검출시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나. [표8]의 제2그룹 물질 검출시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수입신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물질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 1) 동일한 물질 2회
- 2) 식중독균 2회
- 3) 제2그룹에 해당하는 물질 3회

다. [표8]의 제3그룹 물질 검출시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수입신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1년 이

내에 해당 물질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

- 1) 제3그룹에 해당하는 물질 3회 (제2그룹 물질 중 식중독균이 1회 검출된 경우, 3그룹 물질이 검출된 횟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제1그룹부터 제3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검출시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및 별표 9 제2호다목2)나)에 따른 정밀검사(다만, 수입중단 조치 여부는 검출된 물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 세부조치 공통기준(가.~라. 공통 적용)

- 1) 가.부터 라.에 따른 "수입 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가.부터 라.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 해제 조치 이후 수입(생산일 기준)되는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2)가)에 따른 연속 5회 정밀검사를 하되, 수입중단 원인이 된 부적합 물질을 포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3) 가.부터 라.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작업장의 부적합 이력 및 위해정보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기 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

한다.	-----.
3. 식육의 품목은 쇠고기, 쇠고기 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 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 식육 등을 말하며, 식육의 제품명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 ----- ----- -----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축·수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생증명서 및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축산물의 경우 부분을 포함하며, 수산물의 경우 국내 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9조(축·수산물의 수출 위생증명서 등의 요건)----- ----- ----- ----- -(부분 또는 국내 축·수산물 검역기관에서 확인된 사본을 포함한다)-----.
제10조(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및 방법) ① ~ ② (생 략) ③ 수산물의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 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내장, 지느러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트(HS 0511)로	제10조(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물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등 부산물(단,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입이

분류되는 품목(단,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제외한다)은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하며, 동 품목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를 반려한다.
④ 제2항의 현물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신속하게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의 현물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은 현장에 출장하여 현물을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이사항을 통보 받은 관계 공무원등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적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⑤ <삭 제>
제13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별표 5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별표 5 제2호에서 정한 단성분 검사대상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 2.2. 다성분 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7.1.3 단성분 시험법에

급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입 식품등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u>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u> : 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으며, 검사 결과 통보 전 조건부 대상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적합시 반송·반출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신 설>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② 수입 수산물의 수입신고서 전산 등록 및 변경 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제21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는 수입 식품등과 그 발급조건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u>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건부</u>---- 3. <u>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대상 수입식품등</u> : 위반사항 보완을 완료할 때 까지 유통판매 할 수 없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 수입신고한 용도이외 사용 불가 ② <삭 제> 제21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
--	--

도변경 승인)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정적서의 시험·검사항목의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밀 검사 <u>중점검사항목(축산물의 경우 무작위검사항목)</u>을 따른다. (이하 생략) 제24조(유해물질) (생 략)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1) ① 에 해당하는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0) (1)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과 ④ 기타 의약품 성분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u>화학적 합성품</u> 3. (생 략) 제25조(수입 최소량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란 신고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도변경 승인) ----- ----- ----- ----- ----중점검사항목을-----.(이하 생략) 제24조(유해물질) (현행과같음) 1.----- ----- ----- --- 9) (1)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당뇨병치료제----- -----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u>화학적 합성품(다만, 제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물질은 제외한다.)</u> 3.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입 최소량의 범위)----- -----5)----- ----- ----- ---
--	---